

발주청의 건설공사 사후평가위원회 운영 내실화 방안

이두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정책연구소 건설공사 사후평가센터

e-mail : ldh24@kict.re.kr

Improvements of operation of post evaluation committee for construction projects

Du-Heon Lee

Post Construction Evaluation & Mgmt. Center, Dept. of Construction Policy Research,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KICT)

요약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는 공공건설공사 수행과정에서의 공사비, 공사기간 등의 변동사항이나 시행과정 및 운용상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개선사항 등을 준공이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차후 유사한 건설공사 수행시 유용한 자료로써 활용하고자 도입되었다. 그러나, 공공발주청에서 형식적인 건설공사 사후평가위원회 운영되거나,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등 평가 수행결과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결과에 대한 활용도 제고 측면에서의 사후평가위원회 운영 내실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1. 서론

건설공사 사후평가는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에 대해 사업 수행성과를 준공이후에 재평가함으로써, 차후 유사사업 추진 시 그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발주청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결과에 대해 객관성과 신뢰성이 결여되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결과에 대한 활용도 제고 측면에서의 사후평가위원회 운영 내실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발주청의 사후평가위원회 운영 현황

현행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는 공공발주청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적절성 판단여부도 발주청 내에 설치된 사후평가위원회에서 검토됨에 따라 객관성 및 신뢰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리고 사후평가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발주청에서 의무적으로 반영·기록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 사후평가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도출되는 많은 개선 의견이 당해 건설공사나 차후 수행되는 건설공사에 활용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사후평가위원회에서 도출되는 개선의견이 해당 건설공사 유지관리 활동 및 차후 건설공사 공사 수행시 참조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기록 유지·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후평가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별도로 인원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발주청으로부터 사후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전문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공사 사후평가센터에 많은 문의를 해 왔고, 발주청에서는 내부직원 위주로 위원을 구성하는 등 형식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 실효성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현재 운영 중인 발주청 사후평가위원회의 적극 운용·활용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사후평가위원회 인원 구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사후평가위원회 운영 내실화 방안^{[1][2]}

건설공사 완공 후 시설물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계획 대비 실제 수요의 감소, 민원발생, 반복적인 교통시설물의 안전사고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건설공사 사후평가를 수행을 통해서 원인이 분석되고 개선사항이 도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사후평가위원회에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사후평가위원회에서 수요증진 방안, 다양한 사회적 편익 발굴 의견, 사업비·사업기간 절감방안 등 차후 유사사업에 환류할 수 있는 제도 및 사업적 측면의 개선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사항이나 의견들이 공용 중인 시설물에 적용되거나 차후 건설공사 수행에 참고가 되지 못하고 단순히 사후평가 수행결과로만 축적되고 있다. 따라서 발주청의 사후평가위원회에서 제시된 개선의견을 반영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고, 개선의견 미수용 시 사후평가 결과보고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시행지침 제12조 제6항 개선 및 별표8 신설). 이처럼 사후평가 과정이나 사후평가위원회에서 도출된 개선의견들을 체계적으로 기록 유

지·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전문관리기관에서 종합적으로 조사·분류·분석하여 공공사업을 추진과 관련된 건설 관계자들에게 확산·전파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발주청 자체적으로 구성한 사후평가위원회에서 수행결과를 검토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객관성과 신뢰성이 결여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발주청에서 사후평가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얼마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제도 개선시행의 성패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 사후평가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한 시행지침 개선(안)

현행	개정(안)
<p>제12조(사후평가위원회) ①~③ (생략) <신설></p>	<p>제12조(사후평가위원회)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후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외부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하여 7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제8조제1항에 의한 사업효율 및 과급효과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총공사비 50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외부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④ (생략)</p>	<p>⑤ (조항 이동)</p>
<p>⑤ 발주청은 사후평가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⑥ 발주청은 사후평가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별표 8의 건설공사 사후평가위원회의 의견 반영결과 및 위원별 의견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신설>	<p>[별표 8] (1) 건설공사 사후평가위원회 의견 반영결과 양식</p> <p style="text-align: center;"><u>건설공사 사후평가위원회 의견 반영결과</u></p> <p>□ 건설공사명 (사후평가 용역명): ()</p> <p>□ 위원 의견 총합</p> <table border="1"> <thead> <tr> <th>위원 의견</th> <th>반영</th> <th>부분반영</th> <th>미반영</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총 건</td> <td>건</td> <td>건</td> <td>건</td> <td></td> </tr> </tbody> </table> <p>□ 의견 종합</p> <table border="1"> <thead> <tr> <th>위원명</th> <th>순번</th> <th>위원 의견</th> <th>유형</th> <th>반영 여부</th> <th>반영내용 (미반영시, 사유기재)</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3</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3"></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3</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유형'에는 아래의 해당되는 사항의 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며 중복표기 가능 ① 사후평가 관련 법 제도에서 명시한 평가 항목, 수행절차 및 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② 사업수행성과(공사비, 공사기간, 안전, 변경, 제시된 분석방법 및 결과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③ 사업효율(수요, B/C 등)의 분석방법 및 결과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④ 과급효과(민원, 하자, 지역경제, 환경 등)의 분석방법 및 결과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⑤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⑥ 당해 건설공사 시행과정이나 시설물 감용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 의견 ⑦ 기타, 주요중점방안, 발주청 요청사항 등에 대한 의견 * '반영여부'는 반영, 부분반영, 미반영으로 표시 * '비고'란은 반영 또는 부분반영되었을 경우, 반영된 '사후평가서' 페이지를 기재</p> <p>(2) 건설공사 사후평가위원회 위원별 의견서 양식</p> <p style="text-align: center;"><u>건설공사 사후평가위원회 위원 의견서</u></p> <p>□ 건설공사명 (사후평가 용역명): ()</p> <p>□ 위원 성명: (인)</p> <p>□ 분야: (아래 해당되는 분야 번호 기재) * 공통분야: ①제도·정책·건설관리, ②교통, ③환경, ④건축설비, ⑤토목일반 * 시설분야: ⑥도로, ⑦철도, ⑧공항, ⑨항만/해안, ⑩수자원(댐, 상하수도 등), ⑪건축/단지조성, ⑫플랜트/환경시설</p> <table border="1"> <thead> <tr> <th>순번</th> <th>검토의견</th> <th>의견 유형</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의견 유형'에는 아래의 해당되는 사항의 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며 중복표기 가능 ① 사후평가 관련 법 제도에서 명시한 평가 항목, 수행절차 및 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② 사업수행성과(공사비, 공사기간, 안전, 변경, 제시된 분석방법 및 결과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③ 사업효율(수요, B/C 등)의 분석방법 및 결과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④ 과급효과(민원, 하자, 지역경제, 환경 등)의 분석방법 및 결과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⑤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⑥ 당해 건설공사 시행과정이나 시설물 감용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 의견 ⑦ 기타, 주요중점방안, 발주청 요청사항 등에 대한 의견 * '비고'란은 '사후평가서' 페이지 등을 기재</p>	위원 의견	반영	부분반영	미반영	비고	총 건	건	건	건		위원명	순번	위원 의견	유형	반영 여부	반영내용 (미반영시, 사유기재)	비고		1						2						3							1						2						3						순번	검토의견	의견 유형	비고																
위원 의견	반영	부분반영	미반영	비고																																																																								
총 건	건	건	건																																																																									
위원명	순번	위원 의견	유형	반영 여부	반영내용 (미반영시, 사유기재)	비고																																																																						
	1																																																																											
	2																																																																											
	3																																																																											
	1																																																																											
	2																																																																											
	3																																																																											
순번	검토의견	의견 유형	비고																																																																									

[그림 1] 사후평가위원회 의견 반영결과 기록 유지·보관을 위한 시행지침 개선(안)

발주청 사후평가위원회의 적정한 위원 수에 대한 구성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공건설공사 수행과 사후평가가 수행경험이 많은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의 사후평가위원회 운영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공사규모별 사후평가위원회 구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시행지침 제12조제4항 신설). 개정안 내용은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외부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하여 7인 이상, 500억원 미만 건설공사는 외부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발주청 사후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방안이다.

4. 결론

본 고에서는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결과와 활용도 제고를 위해 사후평가위원회 위원의 의견 및 반영여부를 보고서에 포함 작성하고,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위원회 구성 인원을 구체화 하는 등 사후평가위원회 운영 내실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그동안 공공발주청에서 형식적으로 사후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거나 사후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단순 참조만 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사후평가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과 건설공사 추진과정상의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 원인 분석을 가능케함으로써 향후 건설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22년도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사후평가지원센터 운영사업”의 재원으로 수행된 연구임

참고문헌

- [1] 이두현, “건설공사 사후평가 체계 내실화를 위한 사후평가위원회 강화 방안”,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pp.5-6, 10월, 2016년.
-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21년 건설공사 사후평가 지원센터 운영사업”, pp.203-206, 3월, 2022년.